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4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4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4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4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4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5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5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5
III. 경영참고사항	6
1. 사업의 개요.....	6
가. 업계의 현황	6
나. 회사의 현황	6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12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 승인.....	12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선임.....	51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52
<input type="checkbox"/>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52
<input type="checkbox"/> 정관의 변경.....	53
※ 참고사항	59

주주총회소집공고

2019년 3월 7일

회 사 명 : 한국콜마홀딩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윤동한, 김병목, 안병준
본 점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덕고개길 12-11
(전 화)02-515-0150
(홈페이지)<http://www.kolma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사장 (성 명)안병준
(전 화)02-515-015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9기 정기)

주주님께

제2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삼가 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오전 9시 00분

2.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산단길 22-17 한국콜마 세종공장 4층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제29기 (2018. 1. 1 ~ 2018. 12. 31) 감사의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제2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이민화(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남동국(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다) 이익배당 예정 내용

- 보통주 1주당 배당금 : 195원 (현금배당률 39%)

- 상환전환우선주 1주당 배당금 : 195원 (현금배당률 39%)

- 전환우선주 1주당 배당금 : 896원 (현금배당률 179%)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도록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미래에셋대우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관리시스템 인터넷주소

: <https://v.miraeassetdaewoo.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9년 3월 12일 ~ 2019년 3월 21일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행사방법 :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

*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사오니 주주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2019년 3월 7일

한국콜마홀딩스 주식회사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최찬오 (출석률: 60%)	김구철 (출석률: 87%)	김현준에이치 (출석률: 0%)
			찬 반 여부		
1	2018.01.18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건	불참	찬성	불참
2	2018.01.31	한국콜마주식회사 주식 매수 건	불참	찬성	불참
3	2018.02.14	제2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불참	찬성	불참
4	2018.03.06	제2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불참	찬성	불참
5	2018.04.11	한국콜마(주) 차입에 대한 자사의 콜마비앤에이치(주) 보유주식 담보 제공의 건	찬성	찬성	불참
6	2018.04.13	한국콜마(주) 차입에 대한 자사의 한국콜마(주) 보유주식 담보 제공의 건	찬성	찬성	불참
7	2018.05.16	씨엔아이개발(주)과의 합병계약 체결의 건	찬성	찬성	불참
8	2018.06.28	씨엔아이개발(주)과의 합병 승인의 건	불참	불참	불참
9	2018.06.29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RCPS 및 CPS 발행의 건 한국콜마(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참여의 건	찬성	찬성	불참
10	2018.07.13	RCPS(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일정 변경의 건	찬성	찬성	불참
11	2018.07.26	씨엔아이개발(주)의 대구은행 차입 인수 건	찬성	찬성	불참
12	2018.08.02	합병경과 보고 및 공고의 건	불참	불참	불참
13	2018.08.24	산업은행 차입의 건	찬성	찬성	불참
14	2018.11.23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불참
15	2019.02.14	제2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연결 및 별도)	찬성	찬성	불참

주) 김현준에이치는 기타비상무이사입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2	5,000,000,000	48,000,000	24,000,000	-

주) 주총승인금액은 이사 전체에 대한 보수 한도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이며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적기준 이상으로 해당회사의 주식(의결권)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력 집중 및 산업의 독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제도를 법률로 금지하여 왔으나 IMF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장점으로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시장으로부터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 받음으로써 주주의 가치를 높이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정착시키며,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역량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 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①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 ②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 ③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④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⑤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영업개황

당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한국콜마(주)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인 한국콜마(주) 등으로 부터 받는 상표권사용수익, 경영관리수수료, 지분법이익, 배당금 및 임대료 등이 주 수입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수익은 계열회사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해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기업가치 상승에 사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의 연결 종속회사 및 주요 자회사는 각각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및 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각 주요 사업부문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부문	회사명
건강기능식품	콜마비엔에이치주식회사 Jiangsu Kolmar Meibao Keji Co.,Ltd.
화장품	한국콜마주식회사 (주)에치엔지 콜마스크(주)
의약품	한국콜마주식회사 콜마파마(주)

- 화장품 부문

(가) 산업의 특성 등

화장품 산업은 화학, 생물학, 약학, 생리학 등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전형적인 정밀화학공업의 한 분야로 높은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화장품은 재화 측면에서는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필수 소비재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산업 측면에서는 전형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으로서 소규모 자본 투자형 산업입니다. 또한 국내외 화장품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고 트렌드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능력과 생산대응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 국내외 시장여건 등

국내 화장품 산업은 연평균 5%대 이상의 성장을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돋보이는 점은 1. 수출의 증가, 2. 온라인 및 드럭스토어 채널의 확대, 3. 화장품 사용자의 확대입니다. 특히 최근 1~2년간 합리적 소비 트렌드의 확산과 빠르게 변하는 소비성향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제품과 PB제품 등이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제약업계, 유통업계, 패션업계 등 이종 산업에서의 화장품 유통판매업 진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따른 화장품 산업 내 변화는 빠르고 다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장성 측면에서 과거 화장품 산업은 전형적인 내수 산업이었으나 2010년대에 접어들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범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북미, 유럽 등 선진시장으로의 수출 역시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업체들의 국내 시장 진출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ODM 시장에 대해 살펴보면, 국내 ODM/OEM 시장에는 현재 약 2~30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당사를 포함한 매출액 기준 상위 3개 업체(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코리아)의 시장점유율은 약 50~60%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ODM 산업 내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으나 또한 다양한 업종에서의 화장품 소매업 진출 트렌드, 날로 세분화되는 소비자 니즈, 급변하는 시장 유행에 따라 ODM/OEM에 대한 브랜드 업체들의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시장점유율은 각 사별 추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다) 영업의 개황 등

당사는 화장품 산업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실현해 왔으며 ODM/OEM업계

선도업체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ODM 방식은 Original Development & Design Manufacturing 의 약자로 당사에서 직접 처방을 연구 개발하여 해당 기술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래처의 주문에 의해 납품되는 방식으로 당사 화장품 부문 매출의 95% 이상이 이에 해당됩니다.

당사의 시장 내 포지셔닝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기준 중고가 위주의 일반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 전반에 걸쳐서 매출을 창출하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을 비롯한 200여 개 이상의 고객사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당사 화장품 부문의 경쟁우위요소로는 (1) R&D 및 품질관리(Quality Control) 능력, (2) 생산대응능력 (3) 제약 산업과의 시너지 등이 있습니다.

(1) R&D 및 품질관리(Quality Control) 능력

당사는 기초/기능성 제품의 R&D에 독보적인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국내 업체 최초로 SUN제품의 미FDA인증을 받았으며 매년 매출의 약 5~6%를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인력의 1/3이 R&D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품질관리 측면에서 당사는 식약처 지정 CGMP(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와 국제기준 CGMP인 ISO22716를 국내에서 최초로 인증받아 업계 선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시장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최다품질관리 인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품질관리에 엄격한 글로벌 고가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의 수주도 받으며 그 수준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 생산대응능력

당사는 2014년 10월 세종시에 화장품 기초 신공장을 완공하며 국내 최대 규모 Capa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생산능력은 국내 약 8,000억원(화장품 기초 6,000억, 화장품 색조 2,000억), 해외 약 2,800억원(북경콜마 1,500억, 미국 PTP 800억, 캐나다 CSR 500억)이며 이는 국내 우수 브랜드 업체들과 대등한 생산 수준입니다.

(제약 부문: 약 4,000억원)

특히 과거에 비해 시장 내 유행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의 국내 ODM/OEM 아웃소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산대응능력은 ODM/OEM업체의 중요한 경쟁우위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3) 제약 산업과의 시너지

화장품 산업과 제약 산업은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이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제품이 인체에 적용되어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별도 매출 중 약 78%는 화장품 부문, 22%는 제약 부문으로 이뤄져 있으며 당사의 화장품 부문과 제약 부문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부문의 경우, 제약부문의 엄격한 공정관리를 적용하여 일반적인 업계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의 핵심 기술인 DDS(Drug Delivery System)를 화장품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기능성 화장품 분야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제약 부문

(가) 산업의 특성 등

제약 산업은 인간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산업으로 특히 위주의 기술집약적 산업이며, 필수소비재 특성을 가진 경기방어적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의약품산업의 특징으로는 1) 국내 생산에 기반을 둔 내수 완제품 중심 산업 2)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산업으로서 제품의 개발에서 임상시험, 인·허가 및 제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국가로부터 엄격하게 통제받는 점 3) 전문의약품의 최종선택권이 소비자가 아닌 처방의사에게 있어 의약품기업들이 전문의약품의 마케팅을 일반소비자가 아닌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나) 국내외 시장여건 등

국내 의약품 시장은 2012년에 시행된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도전적인 환경에 직면하였습니다. 다만, CMO 산업의 경우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한 제약 산업 내 대형사/중소형사 간 역할 분화에 따른 수혜를 받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외 의약품 시장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블록버스터 신약의 특허 만료, 신약승인 수 감소, 제네릭 중심의 의료 정책 등으로 저성장이 예상되나,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은 인구 증가, 급속한 경제 성장, 만성 질환 급증 등으로 향후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다) 영업의 개황 등

당사의 제약 부문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CMO사업과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네릭 CMO사업은 한국콜마 별도 법인과 콜마파마에서,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은 손자회사인 씨제이헬스케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CMO 산업부문

당사(한국콜마 별도) 제약부문에서는 주요 전문/일반의약품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실험, 허가권 취득, 생산 등을 담당하는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2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K-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 안전기준) 적합판정(2002년 7월) 및 제조업허가(2002년 5월)를 받아 2002년 8월부터 연고제, 액제, 고형제 의약품과 의약품 등의 개발, 생산 전문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현재까지 국내에서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사업만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업체 중 당사가 매출 기준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생산 가능 제형 수 및 보유 허가권 수 또한 당사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최근사업연도말 기준 475품목)

※ 시장점유율은 각 사별 추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당사 제약 부문의 경쟁우위요소로는 1) 약가 인하 정책에 따른 수탁 부문 매출 증대기대 2)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 3) 화장품 산업과의 시너지 4) 증설을 통한 생산대응능력 확보 등이 있습니다.

1) 약가 인하 정책에 따른 수탁 부문 매출 증대 기대

'약가산정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주요 의약품 판매회사들의 매출액 및 이익 등이 다소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당사로의 아웃소싱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신약 개발 위주의 대형제약사와 영업으로 특화하는 중소형 제약사로 제약 시장이 양분되는 가운데, 일선 제약사들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자체적인 허가권 취득 및 생산 여력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바, 여러 제약사들로부터 수탁의뢰를 받는 당사의 특성상 의약품생산에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

당사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 부문의 매출 비중은 각각 약 65%, 35%로 일정 수준 다각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 의약품 매출을 통한 전문 의약품 약가 인하 리스크의 분산이 일정 수준 가능하며, 향후 지속적인 일반의약품 개발을 통하여 약가 인하 정책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3) 화장품 산업과의 시너지

화장품 산업과 제약 산업은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이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제품이 인체에 적용되어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분야에서 축적된 업계 최고수준의 유효기술을 생산 공정이 유사한 제약 부문의 연고크림제형 생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부문 피부과학연구소의 오랜 연구결과와 노하우를 피부과 전문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4) 증설을 통한 생산대응능력 확보

당사 제약부문은 지난 2년간 기존 1,500억 CAPA에 2,500억 원 CAPA를 추가하는 증설을 진행하여 2018년 말 현재 약 4,000억 원의 CAPA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용고형제의 생산능력이 2배 이상 증대되고, 무균제(주사제, 점안제, 수액제)의 대단위 생산 제형을 추가하여, 국내 제네릭 업체 중 최초로 전 제형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EU-GMP(유럽), C-GMP(미국) 인증을 취득하여, 장기적으로 제약 부문 내 수출 비중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헬스케어 산업부문

당사는 지난 2018년 4월 씨제이헬스케어를 인수함으로써 당사의 제약부문 하에 헬스케어 산업부문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씨제이헬스케어는 1984년 6월에 제약사업을 시작하여 글로벌 수준의 오송 완제 공장('10.12) 준공 등을 수행하였고, 2014년 4월에 독립적인 법인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개발한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을 대한민국 30호 신약으로 선보이며 인정받은 R&D 역량을 바탕으로 현재는 한국콜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부문에서는 내용고형제, 주사제, 의약품 원료 등을 전문의약품과 H&B 대표 드링크 제품(컨디션, 헛개수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바이오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개발을 통해 아시아, 유럽, 미주 지역의 다수 현지 파트너와 R&D 및 마케팅, 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당사가 개발 중인 신약의 선진시장 진출을 위하여 주요 지역별 포스트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내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수출사업을 개진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거점 국가에는 숙취해소음료 컨디션을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인증 이후에도 혁신적인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 합성신약, 바이오의약품, 개량신약까지 차별화된 포트폴리오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벌 신약 역량 강화에 연구개발비 및 설비 투자를 지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의 대표적인 신약 케이캡정은 2018년 7월에 식약처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고 국내 30호 신약으로 출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캡정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계열 중 가장 진보한 기전 약물로 기존 약물들이 갖고 있던 주요 한계점들을 극복한 제품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부문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함)한 식품"으로 정의되며, 기능성이라고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는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또는 성분)인 "고시형 원료"와 식약처장이 별도로 인정한 원료(또는 성분)인 "개별인정형 원료"로 구분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주요 특징

구분	주요 내용	독점적 권리	당사 주요 제품
고시형 원료	*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기능성원료 * 제조기준, 규격, 최종제품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제품 생산 및 판매 가능	해당사항 없음	프로바이오틱스, 밀크씨슬, 비타민 등
개별인정형 원료	*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능성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 *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해서는 원료의 안정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의 자료를 심의 받아야 함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업자만이 제조 또는 판매 가능	HemoHIM

당사는 소재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개발하여 면역기능개선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장건강개선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의 건강기능식품을 선바이오텍사업부문과 푸디팜사업부문에서 OEM/ODM 방식으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기준, 국내의 496개의 건강기능식품 업체 중 2위의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선바이오텍사업부문 및 푸디팜사업부문 실적 합계)

소득수준의 증가 및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의 판매실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실적은 2.24조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수출액은 0.11조원 으로 전년대비 0.6% 감소하였습니다.

(국내시장규모 2.70조원, 연평균 판매실적 성장률 : 1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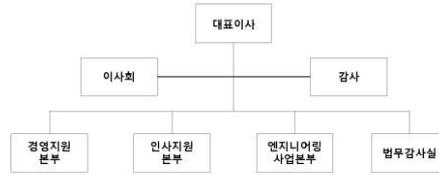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성장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장건강 건강기능식품(프로바이오틱스), 간건강 건강기능식품(밀크씨슬추출물)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 등으로 인한 간건강 제품에 대한 소비수요 증대, 일반 방사능 유출, 환경오염, 자외선 등으로 인한 면역기능 및 피부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등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중 당사의 주력제품은 면역기능개선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설립 당시 한국원자력기술원으로부터 이전 받은 면역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2006년 식약처로부터 당귀혼합추출물을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승인 받았습니다. 동 소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은 2017년 현재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실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5년간 연평균 23.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해 2017년 9월 중국 현지 법인인 Jiangsu Kolmar Meibao Keji Co.,Ltd.를 자회사로 설립하였고, 2017년 11월 현지 법인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2018년 9월 Yantai Kolmar Atomy Health Care Food Co.,Ltd.에 신규 투자하여, 향후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해 수익 증대와 해외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조직도

한국콜마홀딩스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 1호 의안: 제2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본 공시의 '1. 사업의 개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현금흐름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15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 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대 차 대 조 표(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29 (당 기) :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28 (전 기) :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29 (당 기)		제 28 (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230,116,597,522		284,841,268,022
1. 현금및현금성자산 (주석 3,32,33,39)	69,801,977,884		50,890,944,942	
2. 단기금융상품 (주석 3,4,32,33,34,39)	17,367,764,447		138,591,126,495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주석 5,32,33,39)	54,437,305,340		44,692,824,702	
4. 기타금융자산 (주석 6,32,33,34,39)	23,705,376,411		2,500,224,563	
5. 기타유동자산 (주석 7,32,33,39)	12,917,543,122		8,129,335,407	
6. 재고자산 (주석 8)	51,856,950,956		40,021,085,619	
7. 당기법인세자산	29,679,362		15,726,294	
II. 비유동자산		651,570,701,697		465,058,271,921
1.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주석 9,32,33,39)	902,390,040		1,343,445,060	
2. 유형자산 (주석 10)	143,079,715,486		129,257,593,970	
3. 투자부동산 (주석 11)	102,378,996,849		84,699,781,679	

4. 무형자산 (주석 12)	25,485,197,369		20,010,845,826	
5.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주석 13)	310,315,268,964		187,719,133,589	
6. 장기기타금융자산 (주석 4,14,32,33,34,39)	60,666,849,783		31,974,368,294	
7. 기타비유동자산 (주석 7)	146,248,124		132,793,124	
8. 이연법인세자산 (주석 30)	8,596,035,082		9,920,310,379	
자 산 총 계		881,687,299,219		749,899,539,943
부 채				
I. 유동부채		216,934,404,903		278,243,175,890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주석 15,32,33,39)	79,904,090,458		74,606,527,381	
2. 차입금 (주석 10,16,32,33,35,36,39)	111,335,637,295		158,407,014,887	
3. 파생금융부채 (주석 17,32,33,34,39)	3,459,592,000		15,149,814,034	
4. 당기법인세부채	12,509,066,213		21,401,825,369	
5. 기타유동부채 (주석 18,32,33,39)	9,308,116,141		8,376,933,030	
6. 총당부채 (주석 20)	417,902,796		301,061,189	
II. 비유동부채		169,330,553,809		79,433,634,924
1. 순확정급여부채 (주석 19)	4,954,888,562		3,823,122,584	
2. 차입금 (주석 10,16,32,33,36,39)	72,663,614,132		32,599,913,883	
3. 파생금융부채 (주석 17,33,34,39)	28,634,403,593		1,295,549,687	
4. 기타비유동부채 (주석 18,32,33,39)	58,748,709,282		38,518,214,421	
5. 총당부채 (주석 20)	178,172,712		155,009,597	
6. 이연법인세부채	4,150,765,528		3,041,824,752	
부 채 총 계		386,264,958,712		357,676,810,814
자 본				
지배기업소유주지분		381,416,850,240		293,782,032,281
I. 자본금		8,969,483,000		8,374,468,000
1. 보통주자본금	8,969,483,000		8,374,468,000	
II. 자본잉여금		204,888,023,938		172,235,183,698
1. 주식발행초과금	185,095,054,038		140,878,396,651	
2. 기타자본잉여금	19,792,969,900		31,356,787,047	
III. 자본조정		(1,492,484,676)		(1,492,484,676)
1. 자기주식	(684,589,461)		(684,589,461)	
2. 기타자본조정	(807,895,215)		(807,895,215)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037,037,993)		(978,554,144)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7,124,798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853,675,256)		-	
3. 해외사업환산손익	(1,564,039,709)		(1,024,002,637)	
4. 지분법자본변동	380,676,972		28,323,695	
V. 이익잉여금		171,088,865,971		115,643,419,403
1. 법정적립금	2,005,764,032		1,225,050,194	
2. 임의적립금	54,600,000,000		22,530,000,000	
3. 미처분이익잉여금 (주석 20)	114,483,101,939		91,888,369,209	
비지배지분		114,005,490,267		98,440,696,848
자 본 총 계		495,422,340,507		392,222,729,12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881,687,299,219		749,899,539,943

- 연결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9 (당) 기 :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28 (전) 기 :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29 (당) 기		제 28 (전) 기	
I. 매출액 (주석 22,23)		561,696,121,306		408,327,745,036
II. 매출원가 (주석 23)		(430,074,276,626)		(300,236,371,312)
III. 매출총이익		131,621,844,680		108,091,373,724
IV. 판매비와관리비 (주석 23)		(47,525,609,197)		(46,186,223,587)
V. 대손상각비		(607,422,858)		(107,091,431)
VI. 관계기업과공동기업투자손익 (주석 13)		11,324,245,265		19,965,572,132
VII. 영업이익		94,813,057,890		81,763,630,838
VIII. 기타수익 (주석24)	1,147,874,074		500,441,254	
IX. 기타비용 (주석24)	(1,019,139,006)		(326,364,824)	
X. 금융수익 (주석25)	32,791,050,811		6,148,784,449	
X I. 금융비용 (주석25)	(16,389,134,989)		(20,458,037,658)	
X 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1,343,708,780		67,628,454,059
1. 법인세비용 (주석 26)	(21,111,044,600)		(15,964,456,449)	
X III. 연결당기순이익		90,232,664,180		51,663,997,610
연결당기순이익의 귀속 :				
1.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62,680,334,396		28,032,100,059	
2. 비지배지분	27,552,329,784		23,631,897,551	
X IV. 연결당기타포괄손익		(1,742,921,071)		(3,881,606,21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172,435,115)		(2,329,390,042)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41,357,020	
2. 해외사업환산손익	(524,788,392)		(1,130,871,588)	
3. (부의)지분법자본변동	352,353,277		(1,339,875,47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1,570,485,956)		(1,552,216,169)	
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197,534,823)		(959,287,648)	
2. 관계기업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877,092,438)		(592,928,521)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504,141,305		-	
X V. 연결총포괄손익		88,489,743,109		47,782,391,399
연결총포괄손익의 귀속 :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61,058,505,185		24,366,759,851	
2. 비지배지분	27,431,237,924		23,415,631,548	
X VI.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손익 (주석 27)				
1. 지배기업 기본주당이익		3,608		1,683
2. 지배기업 희석주당이익		3,170		1,683

-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제 29 (당) 기 :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28 (전) 기 :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자 본 금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 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소계		
2017년 1월 1일(전기초)	8,374,468,000	153,020,704,888	(1,492,484,676)	1,286,464,143	91,584,564,989	252,773,717,344	66,305,618,325	319,079,335,669
I. 연결총포괄손익								
1. 연결당기순이익	-	-	-	-	28,032,100,059	28,032,100,059	23,631,897,551	51,663,997,610
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807,393,400)	(807,393,400)	(151,894,248)	(959,287,648)
3. 관계기업의 이익잉여금변동	-	-	-	-	(592,928,521)	(592,928,521)	-	(592,928,521)
4.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	-	-	145,717,575	-	145,717,575	(4,360,555)	141,357,020
5.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1,024,002,637)	-	(1,024,002,637)	(106,868,951)	(1,130,871,588)
6. 지분법자본변동	-	-	-	(1,386,733,225)	-	(1,386,733,225)	46,857,751	(1,339,875,474)
II.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1. 연차배당	-	-	-	-	(2,580,972,580)	(2,580,972,580)	(1,680,735,420)	(4,261,708,000)
2. 관계기업의 사업결합	-	2,373,365,579	-	-	-	2,373,365,579	-	2,373,365,579
3. 종속기업 지분율 변동 등에 따른 변동	-	81,274	-	-	-	81,274	95,966,726	96,048,000
4. 비지배지분 추가취득	-	-	-	-	8,048,856	8,048,856	10,304,215,669	10,312,264,525
5. 장기지분매각기타채무의 변동	-	16,841,031,957	-	-	-	16,841,031,957	-	16,841,031,957
2017년 12월 31일(전기말)	8,374,468,000	172,235,183,698	(1,492,484,676)	(978,554,144)	115,643,419,403	293,782,032,281	98,440,696,848	392,222,729,129
2018년 1월 1일(당기초)	8,374,468,000	172,235,183,698	(1,492,484,676)	(978,554,144)	115,643,419,403	293,782,032,281	98,440,696,848	392,222,729,129
회계정책변경의 효과	-	-	-	(1,369,712,146)	1,369,712,146	-	-	-
I. 연결총포괄손익								
1. 연결당기순이익	-	-	-	-	62,680,334,396	62,680,334,396	27,552,329,784	90,232,664,180
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1,066,574,885)	(1,066,574,885)	(130,959,938)	(1,197,534,823)
3. 관계기업의 이익잉여금변동	-	-	-	-	(877,092,438)	(877,092,438)	-	(877,092,438)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509,521,907	-	509,521,907	(5,380,602)	504,141,305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	-	-	-	(10,609,815)	10,609,815	-	-	-
6.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540,037,072)	-	(540,037,072)	15,248,680	(524,788,392)
7. 지분법자본변동	-	-	-	352,353,277	-	352,353,277	-	352,353,277
II.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1. 연차배당	-	-	-	-	(3,080,515,660)	(3,080,515,660)	(2,668,670,758)	(5,749,186,418)

2. 전환사채 전환	595,015,000	42,273,552,587	-	-	-	42,868,567,587	-	42,868,567,587
3. 종속기업 지분율 변동 등에 따른 변동	-	(7,613,224,853)	-	-	-	(7,613,224,853)	(9,197,773,747)	(16,810,998,600)
4. 연결실체 내 자본거래 등	-	-	-	-	(62,509,501)	(62,509,501)	-	(62,509,501)
5. 교환권대가 인식	-	261,450,000	-	-	-	261,450,000	-	261,450,000
6. 기타	-	(2,268,937,494)	-	-	(3,528,517,305)	(5,797,454,799)	-	(5,797,454,799)
2018년 12월 31일(당기말)	8,969,483,000	204,888,023,938	(1,492,484,676)	(2,037,037,993)	171,088,865,971	381,416,850,240	114,005,490,267	495,422,340,507

- 연결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제 29 (당) 기 :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28 (전) 기 :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29 (당) 기		제 28 (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8,455,787,298		69,103,392,336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65,884,028,395		79,124,712,523	
(1) 연결당기순이익	90,232,664,180		51,663,997,610	
(2) 조정	5,749,084,366		19,291,109,464	
가. 법인세비용	21,111,044,600		15,964,456,449	
나. 이자수익	(1,924,464,898)		(1,989,692,624)	
다. 이자비용	9,370,085,782		9,893,789,267	
라. 배당금수익	(126,500,424)		(399,771,635)	
마. 파생금융부채평가이익	(16,453,979,643)		(1,378,761,000)	
바. 파생금융부채평가손실	4,440,139,973		9,707,044,187	
사. 단기금융상품평가이익	-		(351,659,105)	
아. 단기금융상품처분손실	134,548,238		131,357,000	
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62,278,800)	
차.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	-		14,257,789	
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손상차손	-		150,000,000	
타.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100,000)	
파.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		250,000,000	
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10,830,022,172)		-	
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134,685,169		-	
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104,943,612)		-	
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실	425,983,871		-	
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평가이익	(2,041,858,994)			
머. 외화환산이익	(1,224,843,996)		(1,307,473,246)	
버. 외화환산손실	1,859,872,836		41,607,125	
서. 퇴직급여	2,856,074,831		2,768,003,487	
어. 감가상각비	7,164,915,172		6,418,718,207	
저. 무형자산상각비	641,311,127		505,393,725	
처. 대손상각비	607,422,858		107,091,431	
커. 기타의대손상각비(환입)	408,182,863		34,316,979	
터.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263,220,479)	

퍼. 유형자산처분이익	(13,670,279)		(18,971,303)
허. 무형자산처분이익	(182,135,558)		-
고. 유형자산처분손실	100,123,231		65,800,226
노. 무형자산처분손실	275,708,557		660,000
도. 재고자산평가손실	422,486,984		(432,935,967)
로. 지분법이익	(10,090,901,707)		(10,798,575,870)
모. 지분법손실	14,332,747		74,737,711
보.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7,974,664)		(9,241,733,973)
소.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	(1,239,701,641)		-
오. 반품충당부채전입(환입)	23,163,115		(153,428,245)
조. 사채상환이익	-		(437,521,872)
(3) 자산및부채의 증감	(30,097,720,151)		8,169,605,449
가.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10,187,135,005)		2,917,517,425
나.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81,108,453)		(490,272,136)
다.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5,332,145,934)		(80,926,813)
라.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12,258,352,321)		(13,540,167,167)
마.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감소(증가)	(210,422,000)		1,764,037,000
바.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2,824,848,960)		19,778,077,871
사.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4,448,518,363		1,585,350,176
아.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326,348,720)		571,526,848
자.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	(142,107,626)		(477,000,000)
차. 순확정급여부채의 증가(감소)	(3,272,388,398)		(3,858,537,755)
카. 반품충당부채의 증가(감소)	88,618,903		-
2. 이자의 수령	2,127,714,581		1,877,608,943
3. 이자의 지급	(2,595,253,539)		(547,024,508)
4. 배당금의 수령	84,058,666		399,771,635
5. 법인세의 납부	(27,044,760,805)		(11,751,676,257)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4,041,366,603)	(66,673,139,925)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42,566,954,207		298,979,597,986
가.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317,289,732,964		143,634,178,688
나.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22,313,646,578		142,326,675,800
다.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		184,897,800
라. 장기기타금융자산의 감소	108,592,595		4,600,000
마.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감소	226,688,060		5,000,000
바. 유형자산의 처분	241,730,910		352,062,902
사. 투자부동산의 처분	-		7,943,698,396
아. 무형자산의 처분	937,200,000		30,000,000
자.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32,680,000		3,007,592,514
차. 관계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	1,416,683,100		1,143,160,250
카.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347,731,636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16,608,320,810)		(365,652,737,911)
가.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214,856,431,739		228,782,807,780
나.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40,217,487,314		67,145,064,122
다.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	-		14,255,000
라. 장기기타금융자산의 증가	3,309,948,390		29,218,521,480
마.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증가	207,061,040		14,500,000

바. 유형자산의 취득	16,147,081,174		18,498,212,053
사. 투자부동산의 취득	18,000,690,000		11,109,479,128
아. 무형자산의 취득	3,484,806,353		843,312,538
자.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취득	120,371,359,800		10,005,055,810
차. 기타의투자자산의 취득	13,455,000		21,530,0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4,509,694,214	22,477,237,075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90,999,955,200		169,380,557,339
가. 차입금의 증가	21,000,000,000		86,385,054,339
나. 유상증자	-		100,000,000
다. 교환사채의 발행	-		52,473,045,000
라. 해외사채의 발행	-		30,422,458,000
마. 상환전환우선주부채의 발행	49,999,980,800		-
바. 전환우선주부채의 발행	19,999,974,400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6,490,260,986)		(146,903,320,264)
가. 차입금의 상환	13,930,048,298		142,168,331,274
나. 배당금의 지급	5,749,186,418		4,261,708,000
다. 신주발행비	-		71,687,770
라. 전환사채 전환시 단주의 지급	27,670		-
마. 비지배주주지분의 취득	1,349,481,100		-
바. 비지배주주지분의 감소	15,461,517,500		401,593,22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3,081,967)	(595,467,941)
Ⅴ. 현금의 증가(감소)(I +Ⅱ+Ⅲ+Ⅳ)		18,911,032,942	24,312,021,545
Ⅵ. 기초의 현금		50,890,944,942	26,578,923,397
Ⅶ. 기말의 현금		69,801,977,884	50,890,944,942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29 (당 기) :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28 (전 기) : 2017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이하 "당사")는 7개의 종속기업(이하 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와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실체")을 연결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1. 당사의 개황과 주요영업내용

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90년 5월 15일에 화장품 및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4월 9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201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화장품 및 제약사업부문과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상호를 한국콜마주식회사에서 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으며 당기와 전기말 현재 보통주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주주명	당기		전기	
	보통주(주)	지분율(%)	보통주(주)	지분율(%)
윤동한	5,055,533	28.18	5,064,533	30.24
윤상현	3,126,475	17.43	3,126,475	18.67
일본콜마	1,337,463	7.46	1,337,463	7.99
기타	8,419,495	46.93	7,220,465	43.10
합계	17,938,966	100.00	16,748,936	100.00

1-2. 종속기업의 현황

당분기와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주요영업활동	소재지	결산월	소유지분율(%)		지배관계 근거
				당기	전기	
콜마비엔에이치(주)(주1)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제조 및 판매	대한민국	12월	56.23	56.23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근오농림(주)(주2)	작물재배 및 농업임대업	대한민국	12월	75.00	75.00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주)에치엔지(주2)	화장품,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	대한민국	12월	100.00	60.94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주)케이비랩(주3)	화장품 도소매	대한민국	12월	0.00	100.00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Jiangsu Kolmar Meibao Keji Co.,Ltd.(주2)	보건식품, 영양식품 제조	중국	12월	100.00	100.00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씨엔아이개발(주)(주4)	부동산임대업 등	대한민국	12월	0.00	77.94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콜마파마(주)(주1)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	대한민국	12월	77.10	77.10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Seokoh Canada, Inc.	부동산임대업 등	캐나다	12월	100.00	100.00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콜마스크(주)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대한민국	12월	50.45	50.45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주1) 당사는 전기 중 콜마비엔에이치(주) 보통주 1,797,704주와 콜마파마(주)의 보통주 1,749,616주를 매각하였으나 투자자의 매수청구권 보유로 인해 회계상 담보차입으로 보아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를 매각으로 인식할 경우 지분율은 각각 50.15%와 69.43%로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전기 중 당사가 보유 중인 콜마비엔에이치(주)와 콜마파마(주)의 보통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총 교환대상 주식수는 콜마비엔에이치(주)와 콜마파마(주) 각각 1,559,044주와 1,673,512주이며, 전량 교환되는 경우 콜마비엔에이치(주)와 콜마파마(주)에 대한 당사의 지분율은 각각 56.23%와 77.10%에서 50.95%와 69.77%로 감소될 수 있습니다.

(주2) 근오농림(주), (주)에치엔지, Jiangsu Kolmar Meibao Keji Co.,Ltd.는 콜마비엔에이치(주)의 종속기업입니다.

(주3) 전기에 (주)에치엔지의 종속기업이면서 콜마비엔에이치(주)의 손자회사였던 (주)케이비랩은 당기 중 (주)에치엔지의 보유지분 전액 처분으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4) 당사는 당기 중 씨엔아이개발(주)을 흡수합병하여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3.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현황

당기와 전기의 연결실체의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종속기업명	당기			

	총자산	총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콜마비앤에이치(주)(주1)	291,536,883	85,007,748	206,529,135	386,365,759	49,322,397	49,167,838
콜마파마(주)	77,881,827	23,170,472	54,711,355	78,442,716	14,672,266	14,543,149
Seokoh Canada, Inc.	14,223,013	10,489	14,212,524	433,797	150,158	(409,469)
콜마스크(주)	23,140,241	9,646,248	13,493,993	73,542,528	4,114,135	4,069,085

(주1) 콜마비앤에이치(주)의 재무정보는 근오농림(주), (주)에치엔지, Jiangsu Kolmar Meibao Keji Co., Ltd.의 재무정보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상의 재무정보입니다.

(단위 : 천원)						
종속기업명	전기					
	총자산	총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콜마비앤에이치(주)(주1)	271,195,826	93,271,438	177,924,388	337,569,055	47,436,930	47,126,317
씨엔아이개발(주)	34,495,863	28,832,269	5,663,594	3,949,852	(22,331)	(7,287)
콜마파마(주)	65,318,509	25,150,303	40,168,206	70,334,618	7,936,684	7,587,448
Seokoh Canada, Inc.	14,718,379	96,385	14,621,994	426,103	128,969	(757,736)
콜마스크(주)	20,227,498	10,802,590	9,424,908	10,615,247	340,959	333,490

(주1) 콜마비앤에이치(주)의 재무정보는 근오농림(주), (주)에치엔지, (주)케이비랩, Jiangsu Kolmar Meibao Keji Co., Ltd.의 재무정보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상의 재무정보입니다.

1-4. 연결대상 범위의 변동

당기에 연결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사유
씨엔아이개발(주)	흡수합병
(주)케이비랩	당분기 보유지분의 전액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2.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2-27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실체는 2018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각각의 지분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개정된 기준서는 건설 또는 개발중인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고, 뒷받침되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에서) 계정 대체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개정된 기준서는 1)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의 고려방법과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2) 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종업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순결제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된다면 그 전부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것, 그리고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여,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연결실체는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15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된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2018년 1월 1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에 인식되도록 소급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영향의 상세 정보는 주석 41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제정된 해석서에 따르면,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입니다. 해당 해석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연결실체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된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종전 장부금액과 최초적용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영향의 상세 정보는 주석 41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2017년 5월 22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합니다. 다만, 회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여 최초 적용일 이후 체결된(또는 변경된) 계약에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예, 기초자산 \$5,000 이하) 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실무적 간편법으로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가) 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 방법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 적용하는 방법(완전 소급법)과,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 적용하는 방법(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재무적 영향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9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습니다.

연결실체가 현재 운용리스로 이용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가치 할인 전 최소리스료의 총합액은 711백만원이며,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하면 687백만원입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전체 (또는 일부)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 대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

하여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할 예정입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개정된 기준서는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일부 중도상환 가능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도록 상각후원가 측정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가 조건변경 되었으나 제거되지 않는 경우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확정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되는 경우제도의 변경 이후 회계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 및 순이자율 산정하기 위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사용된 가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자산인식상한의 영향으로 이전에 인식하지 않은 초과적립액의 감소도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의 일부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발생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개정된 기준서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준서 제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기준서의 최초 적용 시 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비교정보의 재작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소급적용으로 인한 효과는 최초 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한 다른 자본요소)에 반영합니다.

- 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제정된 해석서는 기업이 적용한 법인세 처리가 과세당국에 의해 인정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인식 및 측정에 적용하며, 법인세 처리 불확실성의 회계단위와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석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비교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하거나 최초 적용연도 기초에 변경 효과를 반영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차개선 2015-2017

· 사업결합(기준서 제1103호)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므로,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공동약정(기준서 제1111호)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공동지배력을 획

특하는 거래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기준서 제1012호)

기준서 제1012호 문단 57A의 규정(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과 인식항목을 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 모두에 적용되며,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차입원가(기준서 제1023호)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 되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차입금에 포함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해당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후에 발생하는 차입원가에 적용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2-3. 연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입니다. 당사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은 당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실체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 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실체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

식합니다. 연결실체가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계속 보유하게 되는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 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 이익은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 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제조 위수탁계약을 통해 화장품 ODM 및 제약 CMO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고객과의 계약에서 (A) 제품의 판매, (B) 운송 및 품질관리용역 (C) 원자재 보관서비스로 구별되는 수행의무가 식별됩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연결실체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 제품의 판매의 경우 고객에게 인도하는 시점에 자산의 통제를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수익을 인식하고, (B) 운송 및 품질관리용역과 (C) 원자재 보관서비스는 별도로 제공되는 경우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 또는 용역 제공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2) 변동대가

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게 됩니다. 이때 수익의 인식은 변동대가는 변동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인식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정도까지만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3)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실체는 거래가격을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수행의무에 배분합니다.

2-5.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 또한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이나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3) 표시통화로의 환산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진 모든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마감 환율
- 수익과 비용은 해당 기간의 평균 환율
- 자본은 역사적 환율
-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2-6.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화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8. 금융자산

(1) 분류

2018년 1월 1일부터 연결실체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실체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연결실체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 채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제거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주석 18 참조)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9.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합니다.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생산 또는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모든 원가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 및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2-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물	20년 - 40년
건축물	15년 - 40년
기계장치	4년 - 10년
차량운반구	5년 - 6년
기타의유형자산	4년 - 6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2.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3.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 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 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

여 표시됩니다.

2-1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20년에서 3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2-15. 무형자산

영업권은 주석 2.3(1)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타의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회원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년
기타의무형자산	5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16.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7.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금융부채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18. 금융보증계약

연결실체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9. 복합금융상품

연결실체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와 당사가 보유하는 지분상품으로 교환될 수 있는 교환사채입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 또는 교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 중 내재파생상품은 식별하여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 중 내재파생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만기상환금액은 이자금액을 포함한 현금흐름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20. 퇴직급여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 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연결실체는 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은 자본내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21.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연결실체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손실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2-22.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인 연결실체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인 연결실체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 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리스기간 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됩니다.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3. 자기주식

자기주식은 자본조정 항목으로 재무상태표상 총자본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24. 배당금

배당금은 연결실체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5.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6.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실체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영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7.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실체는 미래에 대해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할인율과 기대임금상승율 등 다양한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2) 법인세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34 참조)

(4) 영업권의 손상검사

연결실체는 정기적으로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과 비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29 (당 기) :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28 (전 기) :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 목	제 29 (당 기)		제 28 (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21,019,451,372		84,409,814,343
1. 현금및현금성자산 (주석 3,31,37,39)	14,030,179,218		321,860,611	
2. 단기금융상품 (주석 3,31,32,37,39)	3,117,764,447		77,250,824,879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주석 5,31,33,37,39)	1,475,948,548		1,601,953,348	
4. 기타금융자산 (주석 6,37,39)	1,584,800,839		3,100,224,563	
5. 기타유동자산 (주석 7,37,39)	810,758,320		2,134,950,942	
II. 비유동자산		462,274,189,014		287,913,277,169
1.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주석 8,31,37,39)	903,290,000		1,375,410,000	
2. 유형자산 (주석 9)	13,011,167,830		525,853,720	
3. 투자부동산 (주석 10)	97,340,780,878		56,460,589,551	
4. 무형자산 (주석 11)	6,146,361,482		3,817,522,601	
5. 종속기업투자 (주석 12)	316,147,495,337		204,348,352,315	
6. 장기기타금융자산 (주석 4,13,37)	22,847,209,419		11,818,648,635	
7. 기타비유동자산 (주석 7)	146,248,124		132,793,124	
8. 이연법인세자산 (주석 29)	5,731,635,944		9,434,107,223	
자 산 총 계		483,293,640,386		372,323,091,512
부 채				
I. 유동부채		107,482,542,033		139,569,332,345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주석 14,31,37)	9,187,732,704		2,214,866,796	
2. 차입금 (주석 9,15,31,37,38)	90,940,637,295		108,136,966,589	
3. 파생금융부채 (주석 16,31,32,38)	3,721,042,000		15,149,814,034	
4. 당기법인세부채	1,745,944,788		13,311,163,494	
5. 기타유동부채 (주석 17,37)	1,887,185,246		756,521,432	
II. 비유동부채		160,306,050,120		69,076,580,869
1. 순확정급여부채 (주석 18)	2,058,323,113		1,476,402,878	
2. 차입금(주석 15,38)	69,263,614,132		29,144,913,883	
3. 파생금융부채 (주석 16,31,32,38)	28,634,403,593		1,295,549,687	
4. 기타비유동부채 (주석 12,17,37)	60,349,709,282		37,159,714,421	
부 채 총 계		267,788,592,153		208,645,913,214
자 본				
I. 자본금 (주석 19)		8,969,483,000		8,374,468,000
1. 보통주자본금	8,969,483,000		8,374,468,000	
II. 자본잉여금 (주석 20)		184,113,500,464		142,821,501,451
1. 주식발행초과금	185,095,054,038		140,878,396,651	
2. 기타자본잉여금	(981,553,574)		-	
3. 전환권대가	-		1,943,104,800	
III. 자본조정 (주석 21)		(684,589,461)		(684,589,461)

1. 자기주식	(684,589,461)		(684,589,461)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주석 22)		(807,462,017)		50,523,781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50,523,781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807,462,017)		-	
V. 이익잉여금 (주석 23)		23,914,116,247		13,115,274,527
1. 법정적립금	1,149,063,664		841,012,098	
2. 임의적립금	1,130,000,000		1,130,000,000	
3. 미처분이익잉여금	21,635,052,583		11,144,262,429	
자 본 총 계		215,505,048,233		163,677,178,298
부 채 및 자 본 총 계		483,293,640,386		372,323,091,512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29 (당) 기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28 (전) 기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29 (당) 기		제 28 (전) 기	
I. 영업수익(주석25,26,33)		27,419,481,318		22,246,565,803
II. 영업비용(주석10,26,33)		(16,764,897,075)		(15,004,987,742)
III. 영업이익		10,654,584,243		7,241,578,061
1. 기타수익(주석27)	14,233,852		272,495,954	
2. 기타비용(주석27)	(708,335,361)		(39,938,322)	
3.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손익(주석12)	(2,800,000,000)		-	
4. 금융수익(주석28)	27,907,312,973		21,638,835,478	
5. 금융비용(주석28)	(14,977,132,905)		(18,712,755,957)	
I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0,090,662,802		10,400,215,214
V. 법인세비용(주석29)		(6,752,446,613)		(3,659,584,011)
VI. 당기순이익		13,338,216,189		6,740,631,203
VII. 기타포괄손익		(316,844,607)		(302,765,928)
후속적으로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지않는포괄손익	(316,844,607)		(451,914,364)	
1. 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주석18)	(839,180,770)		(451,914,364)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주석14)	522,336,163		-	
후속적으로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는포괄손익	-		149,148,436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49,148,436	
VIII. 총포괄손익		13,021,371,582		6,437,865,275
IV. 주당손익(주석30)				
1. 기본주당이익		768		405
2. 희석주당이익		765		405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29 (당) 기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28 (전) 기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29 (당) 기		제 28 (전)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21,624,442,768		11,144,262,429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7,755,695,203		4,855,545,590	
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839,180,770)		(451,914,364)	
3. 당기순이익	13,338,216,189		6,740,631,203	
4. 회계변경의 효과	1,369,712,146		-	
II.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10,609,815		-
1. 임의적립금 이입액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10,609,815		-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4,348,969,820		3,388,567,226
1. 이익준비금	395,360,893		308,051,566	
2. 배당금	3,953,608,927		3,080,515,660	
주당현금배당금(율) :				
보통주 : 당기 195원(39%)				
전기 185원(37%)				
상환전환우선주 : 당기 195원(39%)				
전기 -				
전환우선주 : 당기 896원(179%)				
전기 -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7,286,082,763		7,755,695,203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예정일은 2019년 3월 22일이고,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확정일은 2018년 3월 23일입니다. 한편, 당사는 당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와 전환우선주를 부채로 분류함에 따라 우선배당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당기 중 세후이자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상환전환우선주부채와 전환우선주부채 각각 3,885천원과 139,226천원 입니다.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29 (당) 기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28 (전) 기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자 본 조 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총 계
2017년 1월 1일(전기초)	8,374,468,000	142,821,501,451	(684,589,461)	(98,624,655)	9,407,530,268	159,820,285,603
I. 총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	-	-	-	-	6,740,631,203	6,740,631,203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149,148,436	-	149,148,436

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451,914,364)	(451,914,364)
II.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1. 연차배당 (주식 24)	-	-	-	-	(2,580,972,580)	(2,580,972,580)
2017년 12월 31일(전기말)	8,374,468,000	142,821,501,451	(684,589,461)	50,523,781	13,115,274,527	163,677,178,298
2018년 1월 1일(당기초)	8,374,468,000	142,821,501,451	(684,589,461)	50,523,781	13,115,274,527	163,677,178,298
회계정책변경의 효과	-	-	-	(1,369,712,146)	1,369,712,146	-
I. 총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	-	-	-	-	13,338,216,189	13,338,216,189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522,336,163	-	522,336,163
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839,180,770)	(839,180,770)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	-	(10,609,815)	10,609,815	-
II.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1. 연차배당 (주식 24)	-	-	-	-	(3,080,515,660)	(3,080,515,660)
2. 전환사채의 전환 (주식 15)	595,015,000	42,273,552,587	-	-	-	42,868,567,587
3. 종속기업의 합병 (주식 40)	-	(981,553,574)	-	-	-	(981,553,574)
2018년 12월 31일(당기말)	8,969,483,000	184,113,500,464	(684,589,461)	(807,462,017)	23,914,116,247	215,505,048,233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29 (당) 기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28 (전) 기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29 (당) 기		제 28 (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15,301,120		7,889,212,396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12,603,100,881		3,788,097,323	
(1) 당기순이익	13,338,216,189		6,740,631,203	
(2) 비현금항목의 조정	(5,616,555,875)		(1,585,735,513)	
가. 감가상각비	207,709,134		294,790,338	
나. 무형자산상각비	93,573,530		49,266,179	
다. 퇴직급여	562,312,953		899,636,976	
라. 이자비용	8,305,012,890		8,616,770,997	
마. 기타의대손상각비	408,575,343		-	
바. 단기금융상품처분손실	130,827,674		-	
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134,685,169		-	
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처분손실	425,983,871		-	
자. 무형자산처분손실	275,708,557		660,000	
차. 공동약정투자주식손상차손	2,800,000,000		-	
카.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		250,000,000	
타. 파생금융부채평가손실	4,440,139,973		9,707,044,187	
파. 외화환산손실	1,539,989,910		4,212,213	
하.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263,220,479)	
거. 이자수익	(850,620,367)		(1,097,826,857)	
너. 배당금수익	(3,862,102,116)		(3,389,442,103)	

더. 단기금융상품평가이익	-	(309,901,077)	
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62,278,800)	
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7,581,675,070)	-	
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처분이익	(24,790,968)	-	
서. 파생금융부채평가이익	(16,453,979,643)	(1,378,761,000)	
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평가이익	(2,041,858,994)	-	
저. 채무조정이익	-	(16,841,031,957)	
처. 외화환산이익	(878,494,334)	(1,287,716,269)	
커. 사채상환이익	-	(437,521,872)	
터. 법인세비용	6,752,446,613	3,659,584,011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4,881,440,567	(1,366,798,367)	
가.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141,224,753	86,621,351	
나.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237,391,740	(615,930,430)	
다.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1,387,838,337	(1,194,552,320)	
라.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감소(증가)	624,018,000	4,537,000	
마.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98,934,010)	-	
바.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3,896,622,258	2,012,024,452	
사.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863,458,308	(226,100,024)	
아.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	(960,000,000)	-	
자. 순확정급여부채의 증가(감소)	(1,110,178,819)	(1,433,398,396)	
2. 이자의 수령	790,219,595	1,051,339,452	
3. 이자의 지급	(1,517,286,372)	(382,745,902)	
4. 배당금의 수령	3,862,102,116	3,389,442,103	
5. 법인세의 납부	(14,522,835,100)	43,079,42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1,526,394,383)	(29,937,876,904)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41,542,502,124	235,074,782,630	
가.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238,930,196,109	144,239,385,761	
나.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1,097,738,934	82,800,330,603	
다. 장기기타금융자산의 감소	108,592,595	2,000,000	
라. 유형자산의 처분	-	68,199,266	
마. 투자부동산의 처분	-	7,934,867,000	
바. 무형자산의 처분	740,200,000	30,000,000	
사. 합병으로 인한 순현금유입액	665,774,486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13,068,896,507)	(265,012,659,534)	
가.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64,845,407,936)	(219,304,709,563)	
나.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525,275,564)	(1,995,064,122)	
다. 장기기타금융자산의 증가	(2,949,948,390)	(8,186,539,532)	
라. 유형자산의 취득	(4,640,603,039)	(515,634,518)	
마. 투자부동산의 취득	(17,994,290,000)	(4,481,867,011)	
바. 무형자산의 취득	(716,261,768)	(423,238,978)	
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121,383,654,810)	(30,084,075,810)	
아. 기타의투자자산의 취득	(13,455,000)	(21,530,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4,019,411,870	21,498,799,146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89,999,955,200	135,895,503,000	
가. 차입금의 차입	20,000,000,000	53,000,000,000	
나. 교환사채의 발행	-	52,473,045,000	

다. 해외사채의 발행	-		30,422,458,000	
라.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49,999,980,800		-	
마. 전환우선주의 발행	19,999,974,400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5,980,543,330)		(114,396,703,854)	
가. 차입금의 상환	(2,900,000,000)		-	
나. 교환사채의 상환	-		(111,815,731,274)	
다. 전환사채의 전환	(27,670)		-	
라. 배당금의 지급	(3,080,515,660)		(2,580,972,580)	
IV. 현금의 증가(감소) (I+II+III)		13,708,318,607		(549,865,362)
V. 기초의 현금		321,860,611		871,725,973
VI. 기말의 현금		14,030,179,218		321,860,611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식

제 29 (당) 기 : 2018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제 28 (전) 기 :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한국콜마홀딩스 주식회사

1. 당사의 개황과 주요영업내용

한국콜마홀딩스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90년 5월 15일에 화장품 및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4월 9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201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화장품 및 제약사업 부문과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상호를 한국콜마주식회사에서 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으며 당기와 전기말 현재 보통주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단위 : 주, %)			
	당기		전기	
	보통주(주)	지분율(%)	보통주(주)	지분율(%)
윤동한	5,055,533	28.18	5,064,533	30.24
윤상현	3,126,475	17.43	3,126,475	18.67
일본콜마	1,337,463	7.46	1,337,463	7.99
기타(주1)	8,419,495	46.93	7,220,465	43.10
합계	17,938,966	100.00	16,748,936	100.00

(주1) 자기주식 97,500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당기에 새로 적용된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으며,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제외하고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개정된 기준서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각각의 지분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이 종속기업에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는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당사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상기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개정된 기준서는 건설 또는 개발중인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고, 뒷받침되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에서) 계정 대체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개정된 기준서는 1)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의 고려방법과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2) 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종업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순결제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된다면 그 전부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것, 그리고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여,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15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된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2018년 1월 1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에 인식되도록 소급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영향의 상세 정보는 주석 39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제정된 해석서에 따르면,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입니다. 해당 해석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당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된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종전 장부금액과 최초적용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영향의 상세 정보는 주석 39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2017년 5월 22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합니다. 다만, 회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여 최초 적용일 이후 체결된(또는 변경된) 계약에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예, 기초자산 \$5,000 이하) 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실무적 간편법으로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가) 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 방법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 적용하는 방법(완전 소급법)과,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 적용하는 방법(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재무적 영향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9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습니다.

당사가 현재 운용리스로 이용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가치 할인 전 최소리스료의 총합계는 196백만원이며,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하면 189백만원입니다. 다만, 당사는 전체 (또는 일부)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 대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으나, 당사가 이러한 분석을 완료하기전까지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개정된 기준서는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일부 중도상환 가능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도록 상각후원가 측정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가 조건변경 되었으나 제거되지 않는 경우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확정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되는 경우제도의 변경 이후 회계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 및 순이자율 산정하기 위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사용된 가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자산인식상한의 영향으로 이전에 인식하지 않은 초과적립액의 감소도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의 일부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발생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개정된 기준서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준서 제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 시 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비교정보의 재작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소급적용으로 인한 효과는 최초 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한 다른 자본요소)에 반영합니다.

-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제정된 해석서는 기업이 적용한 법인세 처리가 과세당국에 의해 인정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인식 및 측정에 적용하며, 법인세 처리 불확실성의 회계단위와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석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비교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하거나 최초 적용연도 기초에 변경 효과를 반영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차개선 2015-2017

·사업결합(기준서 제1103호)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므로,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약정(기준서 제1111호)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기준서 제1012호)

기준서 제1012호 문단 57A의 규정(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과 인식항목을 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 모두에 적용되며,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입원가(기준서 제1023호)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차입금에 포함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해당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후에 발생하는 차입원가에 적용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2-3. 수익인식

당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당사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변동대가

당사는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고, 변동대는 변동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인식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3) 거래가격의 배분

당사는 거래가격을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수행의무에 배분합니다.

2-4.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법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5.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이나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6.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화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8. 금융자산

(1) 분류

2018년 1월 1일부터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주석17 참조)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9.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물	30년
건축물	15년
기계장치	6년
차량운반구	6년
공구와기구	6년
비품	6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1.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 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 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

여 표시됩니다.

2-13.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타의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회원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년
기타의무형자산	5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 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1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20년에서 4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6.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금융부채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17. 금융보증계약

당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8. 복합금융상품

당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와 당사가 보유하는 지분상품으로 교환될 수 있는 교환사채입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 또는 교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 중 내재파생상품은 식별하여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 중 내재파생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만기상환금액은 이자금액을 포함한 현금흐름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19. 퇴직급여

당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 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당사는 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은 자본내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20.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손실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2-21.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인 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 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리스기간 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됩니다.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2. 자기주식

자기주식은 자본조정 항목으로 재무상태표상 총자본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배당금

배당금은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4.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5.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당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영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6.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당사는 미래에 대해 많은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당사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할인율과 기대임금상승율 등 다양한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2) 법인세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32 참조)

□ 이사의 선임

- 이민화(사외이사) 선임의 건
- 남동국(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	------	---------------	-----------	-----

이민화	1953.12.08	사외이사	-	이사회
남동국	1957.10.04	사외이사	-	이사회
총 (2)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현 사단법인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한국디지털병원 수출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남동국	세무법인 더택스 회장	대구지방국세청장	-

※ 기타 참고사항

- 두 후보 모두 신규선임 대상자입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8(2)	10(4)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5,000,000,000	5,000,000,000

주) 전기 및 당기의 이사와 사외이사의 수는 해당 기중 임기만료 또는 사임하거나 신규 선임하는 인원 등 총 보수액 측정 시 대상이 되는 모든 인원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 기타 참고사항

- 당기 보수지급 대상인 사외이사 4명 중 2명은 주주총회일부로 임기 만료 예정입니다.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2	2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300,000,000	400,000,000

주) 전기 및 당기의 이사와 사외이사의 수는 해당 기중 임기만료 또는 사임하거나 신규 선임하는 인원 등 총 보수액 측정 시 대상이 되는 모든 인원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 기타 참고사항

- 당기 보수지급 대상인 감사 2명 중 1명은 주주총회일부로 임기 만료 예정입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 9 조] 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p>	<p>[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p>	<p>-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표준정관 준용</p>
<p>[제 11 조] 명의개서 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 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u>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u>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p>	<p>[제 11 조] 명의개서 대리인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u>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u> ④ <좌 동></p>	<p>-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표준정관 준용</p>

<p>[제 12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p> <p>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p>	<p>[제 12 조] <삭 제></p>	<p>-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표준정관 준용</p>
<p><신 설></p>	<p>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 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p> <p>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p>	<p>-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표준정관 준용</p>
<p>[제 16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p> <p>제11조 제12조 규정은 사채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 16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p> <p>제11조 규정은 사채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 제12조 삭제에 따른 문구 정비</p>
<p>[제 21 조] 의장</p> <p>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p> <p>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21 조] 의장</p> <p>① <좌 동></p> <p>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표준정관 준용</p>
<p>[제 29 조] 이사의 수</p> <p>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p> <p><신 설></p>	<p>[제 29 조] 이사의 수</p> <p>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p> <p>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p>	<p>-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으로 인한 결원시 상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 받도록 문구 조정</p>

<p>[제 30 조] 이사의 선임</p> <p>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p> <p>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p> <p>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 30 조] 이사의 선임</p> <p>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u>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의 구분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u></p> <p>② <좌 동></p> <p>③ <좌 동></p>	<p>- 표준정관 준용</p>
<p>[제 31 조] 이사의 임기</p> <p>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2년으로 하고, 모든 이사는 그 연임시에는 임기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하며,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를 그 임기만료일로 한다.</p> <p>② <신 설></p>	<p>[제 31 조] 이사의 임기</p> <p>① <좌 동></p> <p>② 사외이사의 총 연임 기간은 <u>6년을 초과할 수 없다.</u></p>	<p>- 사외이사의 연임 제한</p>
<p>[제 34 조] 이사의 직무</p> <p>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이사 수명일 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p> <p>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p> <p>③ <u>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사장,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 34 조] 이사의 직무</p> <p>① <좌 동></p> <p>② <좌 동></p> <p>③ <u>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 표준정관 준용</p>

<p>[제 37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p> <p>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p> <p>② 이사회는 <u>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u></p> <p><신 설></p> <p><신 설></p>	<p>[제 37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p> <p>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u>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u></p> <p>② 이사회는 <u>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p>	<p>- 상법 390조 반영하여 법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수정</p> <p>- 이사회 소집을 각 이사가 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사회 의장 선임방법 신설</p>
<p>[제 39 조] 이사회 의사록</p> <p>① 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 <u>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u></p> <p>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제 39 조] 이사회 의사록</p> <p>① 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 <u>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u></p> <p>② <좌 동></p>	<p>- 같은 조 2항과 중복 및 표준정관 준용</p>

<p>[제 41 조의 5] <u>감사의 직무</u></p> <p>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p> <p>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p> <p>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p>	<p>[제 41 조의 5] <u>감사의 직무 등</u></p> <p>① <좌 동></p> <p>② <좌 동></p> <p>③ <좌 동></p> <p>④ <좌 동></p> <p>⑤ <좌 동></p> <p>⑥ <좌 동></p> <p>⑦ <u>감사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u></p> <p>⑧ <u>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u></p>	<p>-개정 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라 외부 감사인 선정 권한의 변경 내용 반영</p>
<p>[제 43조의 2] <u>외부감사인의 선임</u></p> <p>회사는 <u>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u>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u>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u></p>	<p>[제 43조의 2] <u>외부감사인의 선임</u></p> <p>회사는 <u>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u> 감사가 <u>선정한 외부감사인</u>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u>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u></p>	<p>-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수시로 개정할 필요 없도록 정리</p>

<p>[제 44 조의 2] 주식의 소각</p> <p>①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 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2 제2항 각호 1의 방법에의할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2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44 조의 2] <삭 제></p>	<p>- 표준정관 준용</p>
---	--------------------------------	------------------

<p>부 칙 [제 4 조] 시행일 이 정관은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p> <p>이 정관은 2013. 6. 26. 부터 시행한다.</p> <p>이 정관은 2014. 3. 28. 부터 시행한다.</p> <p>이 정관은 2017. 3. 24.부터 시행한다.</p> <p><신 설></p>	<p>부 칙 [제 4 조] 시행일 <좌 동></p> <p><좌 동></p> <p><좌 동></p> <p><좌 동></p> <p>이 정관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6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 2019년 9월 전자증권법 시행 이 예정됨에 따라 관련 정관규정의 시행시기 별도로 규정하는 단서 신설</p>
--	---	---

※ 참고사항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내부 결산 및 감사 기간의 지연, 의장 및 각 이사의 참석 가능일자, 주주총회 안건 검토 시간 소요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집중일 중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